

○出席公務員

|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
| 副 區 廳 長     | 潘 尙 均 |
| 總 務 局 長     | 河 永 基 |
| 財 務 局 長     | 池 榮 昌 |
| 都 市 整 備 局 長 | 李 相 河 |
| 建 設 局 長     | 朴 吉 同 |
| 保 健 所 長     | 金 永 浩 |
| 總 務 課 長     | 李 春 基 |

(參 照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 
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4. 4. 12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1994. 3. 24.  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: 1994. 4. 1
- 다. 상정일자: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  
원회(94. 4. 12.)상정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이  
춘 기)

가. 제안이유

• 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 법률제4613  
호)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  
규칙개정과 병행, 동 조례를 개정하여  
구청장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
중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  
소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  
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나. 주 요 골 자

-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
의 의회내 전보·휴직·복직 및 기능  
직공무원의 신규임용권 등을 구의회  
사무국장에게 위임.
-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
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.

• 소속공무원의 승급권을 구의회 사무국  
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  
진재)

○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  
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 
및 기능을 보강하고 의회사무직원등에  
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등  
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 
(1993. 12. 27 법률 제4613호)이 개  
정됨에 따라.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규칙 개정과  
병행하여 종전 구청장이 가진 공무원  
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  
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 
것임.

○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  
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  
26조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  
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 
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없 음

5. 토 론 요 지: 없 음

6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 사 항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 
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82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: 1994. 3. 24  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 법률제4613호)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규칙개정과 병행,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개정골자

-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·복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권 등을 구의회 사무국장에서 위임
-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
- 소속공무원의 승급권을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1. 12. 31 법률제4464호) 제95조 제1항
- 지방공무원법(1993. 12. 27 법률제4613

호) 제6조 제2항, 제27조, 30조의 5, 제60조, 제63조 및 제65조

- 지방공무원 임용령(1993. 12. 31 대통령령 제14042호) 제7조 및 제26조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(1992. 4. 25 대통령령 제13632호) 제6조

3. 조례(안) : 별첨

4. 예산조치 필요성 : 예산조치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동장 또는 보건소장”을 “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또는 동장”으로 한다. 별표 위임사무중 “3. 인장업 폐업신고의 수리”란 다음에 “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

- 가.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(시보임용해제포함)·의원면직
- 나.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
- 다. 소속공무원의 승급
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7조, 제30조의5, 제60조, 제63조 및 제65조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 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

위임  
위임  
위임

구의회사무국장  
보 건 소 장  
구의회사무국장  
보 건 소 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 조 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제5조(위임사무)①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.<br>②생략 | 제5조(위임사무)①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.<br>②현행과 같음. |

신 · 구조문 대 조 표

| 현 행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|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(별표) 위 임 사 무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(별표) 위 임 사 무  |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사 무 명        | 근거법령 | 위임종류 | 수임기관         | 사 무 명   | 근거법령  | 위임종류 | 수임기관               |
| 〈신설〉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|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가.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(시보임용해제포함)·의원면직 |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, 제27조, 제30조의 5, 제60조, 제63조 및 제65조<br>○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| 위임   | 구 의 회 사무국장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나.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 |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 5<br>○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   | 보건소장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다. 소속공무원의 승급 | ○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 |   | 위임   | 구 의 회 사무국장<br>보건소장 |